

제302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〔2024. 3. 5.(화) 10:00〕

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

2024. 3. 5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2024년 3월 5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4 - 18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4년 2월 22일
- 라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3일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에 따라,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취득: 1건

연번	구분	사업내용	사업부서
1	재산취득	○ 공향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- 위 치: 공향동 684-7 - 규 모: 대지면적 166㎡, 연면적 219㎡ - 기준가격: 998,794천원 (토지 507,794천원, 건물 491,000천원) - 소요예산: 1,330,000천원 (시 798,000천원, 구 532,000천원)	주차관리과

4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「공향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」의 건은
 - 공향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(지평식 8면)하는 건으로
 - 위치는 공향동 684-7 번지이며
 -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임
 - 사업규모는 토지 1필지 166㎡와 건물 1동 219㎡이며
 - 소요예산은 총 13억 3,000만원으로 시비 7억 9,800만원(60%), 구비 5억 3,200만원(40%)으로 구성되어 있음

6. 종합의견

-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
- 「공향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」 계획안은 공향동 주택 밀집 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 향후 매입계약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추진 예정임
-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립으로 300m 내 주차장 확보율¹⁾이 다소 낮은 편인 공향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, 보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1) 주차장 평균 확보율(주차면수/차량등록대수*100): 서울시 106.5%, 강서구 102.6%

참고자료1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 치 도



현 장 사 진

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개정 2022. 4. 20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

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신설 2022.11.9.)
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**
 -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**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